

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년 7월 10일

옥 천 군 수



1. 자치법규명

-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2. 개정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'19.7.1 시행)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~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「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장애등급 관련조항과, 일부 조항을 변경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- 교통약자 실태조사 실시문구 변경 개정(안 제3조의2)
-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변경 개정
(안 제10조제3항)
-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
(안 제11조제4항, 제12조제1항제1호)

4. 의견제출

- 「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도시교통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TEL : 043) 730-3533, FAX : 043) 731-3243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-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중 “실시하여야 한다.”를 “실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 본문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위원회 간사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1급 또는 2급 장애인들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1급 또는 2급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”으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은 제12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3조의2(실태조사) 군수는 법 제 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<u>실시</u> 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3조의2(실태조사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실시</u> 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<u>위원회 간사는 교통업무 팀장으로 한다.</u></p> |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 <u>한 차례만</u> ----- -- . ----- -----.</p> <p>⑤ <u>위원회 간사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</u></p> |
| <p>제7조(수당 등) <u>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| <p><삭 제></p> |
| <p>제10조(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탁기간은 <u>3년</u> 이내로 하</p> | <p>제10조(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5년</u> -----</p> |

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1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

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
⑤·⑥ (생략)

제12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)

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과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-----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)

① -----
-----.

1.-----
----- 장애의 정도가 심한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례명 :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| 조 례 안 | 의 견 |
|-------|-----|
| | |